

WM라운지

P2P 대출에 대한 오해

정태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입력 2015-11-02 08:47:20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한 자본시장법개정법률(이른바 크라우드 펀딩법)이 지난 7월 공포됐다. 이른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제도화된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레 크라우드 펀딩의 다른 한 축인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일명 P2P(Peer to Peer) 대출에 모아진다. P2P 대출은 온라인으로 개인들 사이에 이뤄지는 대출을 말한다. P2P업체는 이러한 개인 간 대출이 이뤄 수 있도록 온라인 장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되면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율 면에서 상호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제도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연 10% 내외의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짝 열어줄 '핀테크의 총아'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변종 대부업에 불과하다는 시선도 있다. 금융감독당국 역시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P2P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신청한 컨소시엄에도 P2P 업체가 당연히 참여했을만큼 이 시장의 확대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도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P2P 대출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으니 P2P 대출의 제도화는 곧 결론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P2P 대출의 개념은 쉬운 데에 반해 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현하는 방식은 복잡다양하고 법적 이슈도 많다. 법률전문가에게도 흥미로운 모델이다.

먼저 P2P 대출이 이뤄지는 방식을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 P2P 업체들의 대다수는 이른바 '원리금수취권매매형'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이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자금수요자)과 대출을 하려는 사람(자금공급자) 사이에 직접 대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자금수요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자는 P2P 업체 또는 그와 제휴하는 여신회사(대개는 대부업 등록을 한 여신회사가 별도로 존재한다)가 되고 자금공급자는 여신회사가 자금수요자로부터 상환받는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금수요자에 대한 대출채권자는 여신회사가 되고, 자금공급자는 대출채권자가 아닌 여신회사에 대해 원리금수취권이라는 권리를 보유하는 지위를 가질 뿐이다. 이는 개인인 자금공급자가 직접 대출채권자

가 될 경우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건의 대출 집행을 위해 서로 알지 못하는 복수의 투자자들이 모두 대출자가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어려움과 법률적 리스크, 거래비용을 감안하면 원리금수취권매매형은 다른 방식에 비해 장점이 많다. 앞으로 자금공급자의 대부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P2P 대출 방식으로 가장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P2P 대출에 관해 오해하기 쉬운 두가지를 살펴보자. 먼저 자금수요자 측면이다. 일각에서는 P2P 대출이 온라인으로만 이뤄지고 자금수요자가 대출을 받은 후에는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더라도 P2P 업체가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P2P 대출에서도 대출채권자인 여신회사가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신회사가 채권 추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채권 관리가 허술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자금공급자가 유의해야 할 사안으로는 자신의 투자금이 자금수요자에게 직접 대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자금공급자의 투자금은 자금수요자에게 대출을 실행한 여신회사로부터 일정한 권리를 사오는 데 쓰이고, 그 자체가 자금수요자에게 대출금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P2P 대출에 있어 자금공급자는 대출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수요자가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더라도 직접 자금수요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반대로, 자금수요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더라도 만약 P2P 업체가 파산을 한다면 자금공급자는 원리금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말하자면 자금공급자는 자금수요자와 P2P 업체의 신용위험을 모두 지는 것이다. 따라서 P2P 대출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자금수요자의 신용도뿐만 아니라 P2P 업체가 얼마나 건실한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

대부업법 등 현행 법률 체계상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되는 P2P 대출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 간 대출거래를 통한 비용절감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건전한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참여자들이 P2P 대출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